

선 람	기관 의 장

598호 2020년 9월 29일



# 익산시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익산시청  
발행처 : 홍보담당관

## 훈 령

- 익산시 훈령 제525호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고 시

- 익산시 고시 제2020-16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4
- 익산시 고시 제2020-163호 익산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 5
- 익산시 고시 제2020-1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5
- 익산시 고시 제2020-1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7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0-2286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 익산시 공고 제2020-2357호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31
- 익산시 공고 제2020-2376호 익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40
- 익산시 공고 제2020-2387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1
- 익산시 공고 제2020-2404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2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익 산 시 장

2020년 9월 29일

**익산시 훈령 제525호**

###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민생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1회에 한해서”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직무를 대행한다”를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u>민생경제과장</u>이 되고, 서기는 <u>일자리창출계장</u>이 된다.</p>	<p>제3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일자리정책과장</u>----- -----.</p>
<p>제4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위원의 임기) ----- ----- <u>한 차례만</u> ----- -----.</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u>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수당 등) <u>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u></p>	<p>&lt;삭 제&gt;</p>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9조 (생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익산시 고시 제2020-162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

익 산 시 장

1. 사 업 목 적 : 개전
2. 사 업 내 용 : 임야를 농지로 조성
3. 사 업 비 : 금104,000,000원
4. 사업예정기간 : 당초 : 허가일 ~ 2020년 9월 30일  
 변경 : 허가일 ~ 2021년 12월 31일
5. 사 업 효 과 : 농업생산기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6. 사업시행자
  - 주 소 : 익산시 여산면 옥금동길 \*
  - 성 명 : 정 찬 \*
7. 사업의 구역

토지소재지			지적(㎡)	인가면적(㎡)	지목	비고
읍·면	리	지번				
여산	제남	672-1	4,317	3,345	임	

익산시 고시 제2020-163호

**익산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익산시 창인동2가 1-112번지 일원의 창인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익산시 주택과(☎063-859-593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9월 29일

익 산 시 장

**I.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익산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창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익산시 창인동2가 1-112번지 일원	-	증)16,4 64.5	16,46 4.5	-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0	25	보조간선도로	4,108(250)	평화동 295-2구	신동 395-2대	일반도로		건설299(86.7.04)	
변경	대로	3	10	25~31	보조간선도로	4,108(250)	평화동 295-2구	신동 395-2대	일반도로		건설299(86.7.04)	
기정	소로	1	422	10	국지도로	186	대로3-10	소로1-12	일반도로		익산6(01.01.22)	
변경	소로	1	422	10	국지도로	97	중로2-63	소로1-12	일반도로		익산6(01.01.22)	
신설	중로	2	63	16	국지도로	89	대로3-10	소로1-422	일반도로		금회	

\* ( )는 정비구역 구간

####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0	대로3-10	◦ 일부구간 확폭 -L=250m, B=증6m	◦ 공동주택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감속차로 확보
소로1-422	소로1-422	◦ 도로연장 축소 -L=97m	◦ 공동주택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정비구역 구간 도로신설로 인한 연장 축소
소로1-422	중로2-63	◦ 도로 확폭 -B=10m → 16m, L=89m	◦ 공동주택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정비구역 구간 도로 확폭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법정기준	계획	비고
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 : 10㎡+(735세대-50세대) × 0.05㎡ = 44.25㎡(이상)	2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 - 735세대 × 2.5㎡ = 1,837.5㎡(이상)	3,4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150세대 이상		
어린이놀이터	150세대 이상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영유아보육법에 적합하게 설치)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작은도서관	500세대 이상(도서관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설치)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정비계획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비고
A-1	주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공동주택</li> <li>•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2 오피스텔</li> </ul>	-	
	건폐율	• 76% 이하	80%	
	용적률	• 635% 이하	800%	
	높이	• 35층 이하	-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계획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li> <li>• 기존 공동주택 부지로서 지형의 변화는 거의 없음</li> </ul>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부지경계부에 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li> <li>• 차량 속도제한 및 살수차량 운영</li> </ul>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적정하게 설치·운영</li> <li>• 우·오수의 처리는 분류식 및 자연유하방식으로 계획</li> </ul>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전량 위탁처리</li> <li>•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주민자치에 의하여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li> </ul>	
	소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재난방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 우수관망 확충</li> <li>• 비상차량 진출입이 용이토록 하며 소방법 등 관련 법규 준수</li> <li>• 건축물 내진 설계 등 적정 구조계획 수립</li> </ul>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 방안			
소음·진동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소음[dB(A)]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진동[dB(V)]	65 이하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통안전	• 학생이 정비구역을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도모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 사업시행계획 인가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승인절차 이행

##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20년 ~ 2022년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사. 교통처리계획

아.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명	면적 (㎡)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창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6,464.5	창인동2가 1-112번지 일원	9	-	-	기존 : 9동 신축 : 6동	-	공동주택 6동 신축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구분	명칭	면적 (㎡)	비고
설치	대로3-10	947.87	가감속차로 설치 : B=증6m, L=250m
	중로2-63	454.98	도로 확폭(B=10m → 16m, L=89m)
	도로	123.07	도로 확폭(B=증2~4m, L=44m)
	계	1,525.92	

나. 상·하수도

- 상수관로는 주변의 기존관로에 연결하여 단지내 지하저수조로 유입함
- 우수 및 오수관은 주변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함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 및 익산시 건축조례에 따름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대상지는 과거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바 없으나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도록 함
- 재건축사업에 의해 철거 후 신축하게 될 경우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재해위험요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거 주		비거주	소계	85㎡이하	85㎡이상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150	42	108	-	735	528	207

※ 계획세대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결정되는 내용에 따름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기간내 범죄 예방대책

-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한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
  - 순찰 강화
  -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을 적용한 단지 및 건축계획 수립

구분	계획내용
자연적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li> <li>◦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나 주민들이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보하여 범죄활동가능성 최소화</li> </ul>
영역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로티 및 출입구 일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역성 확보</li> <li>◦ 실질적이거나 가상적인 경계를 만들어 해당 지역에 대한 이용자의 구별과 지역주민간의 공감대 형성</li> </ul>
활용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장소에 대한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예방</li> <li>- 단지내부를 공원화하여 충분한 옥외 휴식공간 설치</li> </ul>

17.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	A	14,938.58	1	14,938.58	공동주택용지

Ⅱ.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 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창인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창인동2가 1-112번지 일원	-	증)16,464.5	16,464.5	재건축 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A	창인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창인동2가 1-112번지 일원	16,464.5	◦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0	25	보조 간선 도로	4,108 (250)	평화동 295-2구	신동 395-2대	일반 도로		건설299 (86.7.04)	
변경	대로	3	10	25~31	보조 간선 도로	4,108 (250)	평화동 295-2구	신동 395-2대	일반 도로		건설299 (86.7.04)	
기정	소로	1	422	10	국지 도로	186	대로3-10	소로1-12	일반 도로		익산6 (01.01.22)	
변경	소로	1	422	10	국지 도로	97	중로2-63	소로1-12	일반 도로		익산6 (01.01.22)	
신설	중로	2	63	16	국지 도로	89	대로3-10	소로1-42 2	일반 도로		금회	

※ ( )는 정비구역 구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0	대로3-10	◦ 일부구간 확폭 -L=250m, B=증6m	◦ 공동주택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감속차로 확보
소로1-422	소로1-422	◦ 도로연장 축소 -L=97m	◦ 공동주택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정비구역 구간 도로신설로 인한 연장 축소
소로1-422	중로2-63	◦ 도로 확폭 -B=10m → 16m, L=89m	◦ 공동주택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정비구역 구간 도로 확폭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A	14,938.58	1	14,938.58	공동주택용지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분	정비계획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비고
A-1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2 오피스텔	-	
	건폐율	• 76% 이하	80%	
	용적률	• 635% 이하	800%	
	높이	• 35층 이하	-	
	색채	• 별첨1에 따름		

<별첨1>. 색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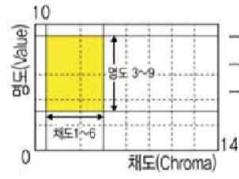
- 건축물 측면 상단에 건설업체의 브랜드명(심볼 또는 로고)을 표기할 수 있으나 건설업체명 사용은 금지 하며 표기시 높이 4.5m, 폭 5.4.m 이내로 표기

<명도 및 채도 권장범위>

구분	명도	채도
외벽(주조색)	3.0~9.0	1.0~6.0
외벽(보조색)	4.0~8.0	1.0~4.5이하
지붕색	2.0~4.0	1.0~4.0
강조색	명·채도 제한없으나 지나치게 원색적이거나 자극적인 색채 배색 지양	

<권장색채 팔레트>

**외벽(주조색)**



10  
명도(Value)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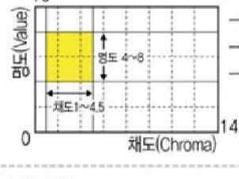
14  
채도(Chroma)

- 전 색상계열 사용가능
- 명도 3.0~9.0
- 채도 1.0~6.0

권장색 팔레트

ISC_20	ISC_28	ISC_30	ISC_44	ISC_46
5GY 9/1	3Y 9.5/1	3Y 8/2	10YR 9/1	7YR 8/2
ISC_52	ISC_53	ISC_60	ISC_68	ISC_69
1RP 9/1	3RP 8.5/1	1PB 9/0.5	N9	N8

**보조색(보조색)**



10  
명도(Value)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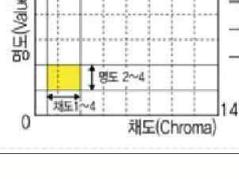
14  
채도(Chroma)

- 전 색상계열 사용가능
- 명도 4.0~8.0
- 채도 1.0~4.5

권장색 팔레트

ISC_17	ISC_23	ISC_32	ISC_33	ISC_40
7.5GY 5/2	4GY 7/2	2.5Y 6/2	2.5Y 4.5/2	4Y 6/4
ISC_48	ISC_55	ISC_57	ISC_65	ISC_72
5YR 6.5/3	4RP 6/2	4RP 4/3	2.5PB 5/3	N6

**지붕색**



10  
명도(Value)  
0

14  
채도(Chroma)

- 전 색상계열 사용가능
- 명도 2.0~4.0
- 채도 1.0~4.0

권장색 팔레트

ISC_26	ISC_27	ISC_35	ISC_42	ISC_43
3.5GY 3/2	3.5GY 3/1	3Y 3/1	4Y 3/3	5Y 3/2
ISC_51	ISC_59	ISC_66	ISC_67	ISC_75
2.5YR 3/4	3RP 3/3	2PB 3/2	1.5PB 3/4	N3

익산시 고시 제2020-164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 063-859-5937)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익 산 시 장

2020년 9월 24일

1. 사업명 : 익산시 동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아람주택 대표 서인철
3. 위치 : 익산시 동산동 158-52번지 외 93필지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16,584.3㎡(기존 16,593㎡)
  - 나. 건축면적 : 3,876.8413㎡(기존 3,832.7643㎡)
  - 다. 연면적 : 54,190.9485㎡(기존 53,677.4843㎡)
  - 라. 규모 : 지하1층/지상28층, 주9/부7, 345세대
  - 마.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바. 공급방식 : 공동주택 / 분양
  - 사. 사업비 : 101,736백만원
  - 아. 사업기간 : 2020. 9. ~ 2022. 10.
5. 주요변경내용
  - 가. 세대수 증가(기존 344세대 ⇒ 변경 345세대)

나. 공사기간 변경(기존 2020.08.01.~2022.07.31. ⇒  
2020.09.01.~2022.10.31.)

다. 기타 경미한 건축 변경 등

6. 승인번호 : 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2020. 06. 04.)

7.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익산시 주택과 비치)

익산시 고시 제2020-165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익 산 시 장

2020년 9월 28일

1. 사업명 : 익산시 팔봉동 더테라스 아트리체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코리아신타(주) 대표 백인균
3. 위치 : 익산시 팔봉동 343-12 외 12필지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38,997㎡
  - 나. 건축면적 : 7,758.6893㎡
  - 다. 연 면 적 : 31,500.8515㎡
  - 라.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주20/부5, 192세대
  -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바. 공급방식 : 공동주택(연립주택) / 분양
  - 사. 사업비 : 76,000백만원
  - 아. 사업기간 : 2020. 10. ~ 2022. 7.
5. 주요변경내용
  - 가. 사업주체 변경 : (주)경현 대표 허화경 → 코리아신타(주) 대표 백인균

- 나. 준공예정일 변경 : 2022. 05. 09. → 2022. 07. 30.
- 6. 승인번호 : 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0. 04. 01.)
- 7.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익산시 주택과 비치)

**익산시 공고 제2020-2286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내용 개정 (안 제11조제1항)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일부감면
  -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 포함), 경로대

상자, 시설수용 불우청소년, 국가유공자,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경기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 (별표3)

나.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내용 개정 (안 제12조)

- 사용(이용)료 반환기준 신설 (별표4)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 (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익산시청 체육진흥과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방문 : 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남중동, 익산시청 체육진흥과)
- E-Mail : ljss1209@korea.kr
- 전 화 : 063-859-4692
- F A X : 063-859-3889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③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 중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를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4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표 4는 별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사용료의 감면기준(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감면비율 (퍼센트)	감면적용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100	
2.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 행사	8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 포함), 경로대상자, 시설수용 불우청소년, 국가유공자,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80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경기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회(장애인체육회포함) 주관 행사(경기)</li> <li>.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li> <li>. 시의 보조·후원·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행사, 경기, 훈련, 체육프로그램</li> </ul>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회의 경우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별표 4]

사용(이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반환금액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개시일 5일전에 취소	·사용(이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1~4일전에 취소	·사용(이용)료 전액 및 위약금
	·사용개시일 이후(당일포함)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times \frac{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times \frac{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사용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개시일 5일전에 취소	·사용(이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1~4일전에 취소	·위약금 공제한 사용(이용)료
	·사용개시일 이후(당일포함)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times \frac{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times \frac{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기타	국가 또는 시의 긴박한 사정 등으로 그 사용(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이용)료 전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이용)료 전액

비고

1.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용사용자가 전액 반환해 주어야 한다.
2. "사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3. 위약금은 사용(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때에는 <u>사용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다.</u></p> <p>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p> <p>② (생략)</p> <p>③ &lt;신설&gt;</p>	<p>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p> <p>① ----- ----- <u>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3과 같다.</u></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p> <p><u>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u></p> <p>1. <u>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하는 때는 사용일 5일 전까지는 사용 및 이용료의 90퍼센트를, 3일 전까지는 50퍼센트, 2일 전까지는 30퍼센트를 반환하며 그 이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이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lt;개정 2006.09.15, 2017.06.30, 단서신설 2017.06.30&gt;</u></p> <p>2. <u>천재지변이나 시의 긴박한 사정</u></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p> <p><u>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4로 정한다.</u></p> <p>1. &lt;삭제&gt;</p> <p>2. &lt;삭제&gt;</p>

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받지 못하며, 그 이용료 및 관람료도 전용사용자가 전액 반환해 주어야 한다.

3. <삭 제>

4. <삭 제>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6. 2. 3.>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본조신설 2012. 7. 17.]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

[별표 3의2] <신설 2016. 8.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1. 법 제22 조제1항제 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이용개시 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이용개시 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 위약금
2. 법 제22 조제1항제 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이용개시 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이용개시 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 위약금

비고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 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 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 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05.13,2016.02.15>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후단신설 2016.0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행사<개정 2016.02.1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 포함), 경로대상자, 시설 수용불우청소년, 국가유공자,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06.09.15,2016.02.15,2017.06.30>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경기<개정 2016.02.15.>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05.13>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하는 때는 사용일 5일 전까지는 사용 및 이용료의 90퍼센트를, 3일 전까지는 50퍼센트, 2일 전까지는 30퍼센트를 반환하며 그 이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이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06.09.15, 2017.06.30, 단서신설 2017.06.30>
2. 천재지변이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받지 못하며, 그 이용료 및 관람료도 전용사용자가 전액 반환해 주어야 한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공고 제2020-2357호**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마을세무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마을세무사 지원 신청(안 제1조~제2조)

- 이 규칙은 목적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

나. 위촉 및 해촉절차(안 제3조)

- 위촉된 마을세무사에 대하여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 수여
- 마을세무사를 추가 위.해촉시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명단 게시

다. 상담 및 수행실적 집계(안 제4조)

- 무료 상담 진행할 때 상담카드(별지 제3호서식) 작성

-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지속적으로 관리
- 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안 제5조)
-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지 5호서식)를 제출

###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세무과(전화 859-5121, 팩스 853-3688)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세정담당자(☎ 859-51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위촉된 마을세무사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상담 및 수행실적 집계) ① 마을세무사는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익산시 마을세무사 지원서

### 1.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세 )	
현 소속		세무사 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 주소	자택			
	사무실			
연 락 처	전화번호 (사무실)	팩스번호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 2. 경 력

근 무 처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유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서명)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익산시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접수번호		<b>세 무 상 담 기 록 카 드</b>		접 수 일	
No.				. . . . .	
상 담 종 류 (V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상 담 방 법 (V표시)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	읍 면 동				
	성 명				
	연 락 처				
<b>상담 내용</b>					
<b>상담 의견</b>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익산시 마을세무사				(인)	



[별지 제5호 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성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중

**익산시 공고 제2020-2376호**

익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익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으로 우리 농업·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 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과 지속적이고 전 지역적이며, 익산시 농산물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
  - 5년마다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

라.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회 운영과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식생활 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시장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농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511 익산시 함열중앙로 83 익산시청 북부청사  
농산유통과(전화 859-3790, 팩스 859-5065)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농산유통과 주무관 차복진(☎ 859-379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익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 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건강한 먹거리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시민과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과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보육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익산시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익산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 및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익산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는 식생활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 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익산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국장·소장·과장
2. 익산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나.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 다.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 라.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 마.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및 전문가
  - 바. 소비자 단체 대표
  - 사.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 ⑥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식생활 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지원
2. 지역 내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6.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7.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인력, 교육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익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이에 대한 사업의 추진은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 교육 사업계획에 연도별 총사업비만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별 예산을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지원센터 지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의 추계가 곤란함.
- 추후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을 추진하여 예산 수립 예정

### 4. 작성자

- 농산유통과 농업7급 차복진

**익산시 공고 제2020-2387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4.

익 산 시 장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어려운 지역경제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재단 설립 필요
- 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상황 변화에 흔들림없이 안정적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거점강소 지역상인 육성
- 골목상권 종합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상권조성

2. 주요내용

- 가. 재단 설립 목적 및 기본 방향, 용어 정의 (제1조부터 제3조)
- 나. 적용범위 및 법인 설립성격, 재단 사업 (제4조부터 제6조)
- 다. 기본재산, 조성근거 및 정관에 기재할 내용 (제7조부터 제8조)

- 라. 임원과 대표이사, 임원의 직무, 이사회 구성·운영 (제9조부터 제12조)
- 마. 직원 임명과 운영재원, 수익사업 수행근거 (제13조부터 제15조)
- 바. 사업연도와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제16조부터 제18조)
- 사. 상권활성화협의회 설치·기능 등 전반적인 사항 (제19조부터 제24조)
- 아.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재단사업 확인·검사 근거(제25조부터 제26조)
- 자. 공무원의 파견 근거 및 운영규정, 시행규칙 등 (제27조부터 제29조)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익산시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전화 063-859-5291 FAX 063-859-5061)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모두 가능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 관리기구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또는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시의 경제관광국장으로서 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사무국장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인조직의 출연금
5. 재단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시의 경제관 광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으로 한다. 위촉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인 이상
2. 도시·건축·디자인·경영·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 이상
3. 상권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4인 이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확인·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11.00. 조례 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고 제2020-2404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신설)이유

- 저출산, 청년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익산시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유입 확대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신설(안 제6조 제2항 별표)

-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내용 신설
  - 지원대상(조건)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익산시민(공무원 제외)
  - 지원 내용 : 5명이상 전입 유도시 50만원, 10명이상 전

입 유도시 100만원 지급

-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내용 신설
  - 지원대상(조건) : 입주대상 선정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연속하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9명 이상인 자녀(태아포함)를 둔 관내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관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 (임대료 및 유지관리 비용 무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은 본인 부담)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753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 기획예산과(전화 859-5731, 팩스 859-505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선아(전화 063-859-573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조례 제2020-2404호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6호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제6조 관련)**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1. 전입세대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1) 쓰레기봉투 지급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2) 태극기 지급 : 세대당 1세트	
		3)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익산사랑카드 발급
		4)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 (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100분의 50범위 내)	익산사랑카드 발급
2. 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1)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60만원 이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3.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실이 있는 경우 종전의 제3조에 따름	1) 1명당 100만원 이내, 분할 지급 -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p>4 . 유 공 기 관 · 단 체 , 기 업 체 , 군 부 대 집 단 전 입 장려금 지급</p>	<p>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속원(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이 있는 유공기관 등 ※ 10명 이상시 신청.지원 가능</p>	<p>1) 1명당 10만원 지급 (개인당 1회만 지급)</p>	<p>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p>
<p>5. 관외 출퇴근 근 로 자 열 차 운 임 비 지원</p>	<p>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근로자)</p>	<p>1)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p>	<p>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p>
<p>6. 인구 늘 리 기 유 공 시 민 전 입 장 려 금 지원</p>	<p>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익산시민(공무원 제외)</p>	<p>1)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 50만원 지급 2)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 100만원 지급 (개인당 1회만 지급)</p>	<p>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가능</p>
<p>7. 다자녀 가 구 주 거 지 원</p>	<p>입주대상 선정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연속하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9명 이상인 자녀(태아포함)를 둔 관내 무주택 다자녀 가구</p>	<p>1)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 (임대료 및 유지관리 비용 무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은 본인 부담)</p>	<p>전입일자 및 동거여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p>

※ 상기 지원사항 중 잔여 지급분(분할 지급분 중 최초 지급분을 제외한 지급액)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